

공유재산(목욕탕/세신)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동목욕탕 세신사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5.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인생략]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건명 : 공유재산(목욕탕/세신)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재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

○ 시설현황 및 대상자 모집분야/ 인원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	허가면적(㎡)	모집분야(인원)
				세신사	세신사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58-2	복지 목욕탕	441.89	7	남 1명

○ 영업내용

장소 (위치)	모집분야	예정가격(부가세 별도)	영업내용	영업시간
신동 목욕탕	세신사	연간 606,182원	이용객 세신 및 마사지	목욕탕 운영 시간 내

○ 영업조건

- 세신사 : 영업장소는 남탕 내로 하고, 세신 후 영업장소 청결관리 및 목욕탕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 서비스 요금 등 이용객 서비스 관련 사항은 공단과 사전 협의 후 결정

다. 사용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라. 최저입찰가격: 분야별 예정가격 이상(부가가치세 10% 별도)

마. 연간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낙찰가로 하고, 둘째 연도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2.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제출기간: 2023. 11. 17.(금) 09:00 ~ 11. 29.(수) 18:00

- 입찰서류는 근무시간 09:00 ~ 18:00에 접수하며,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

- 우) 2612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6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다.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2023. 11. 30.(목) 10:30

※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개찰) 장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팀

3. 입찰방법: 현장 일반경쟁입찰(최고가격 낙찰)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으로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나. 입찰등록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국,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이 없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본 공단에 비치된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일시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5. 입찰참가 방법 및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현장입찰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 또는 지급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마.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경쟁 입찰이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체결(사용허가신청)을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전액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금고로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9. 사용료 납부

가.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1차 년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 허가는 취소됩니다.

10. 기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사용허가조건 및 관계법규 등을 숙지한 후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1차년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는 자동 취소됩니다.

다. 재산의 사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항은 사용허가자(이하 ‘수허가자’) 책임 하에 득하여야 하고, 인허가 명의자와 수허가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수허가자의 영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은 수허가자의 비용으로 설치 및 변경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허가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우리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른다.

사. 수허가자는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유지·관리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도 우리공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사용허가 이후 취소되는 경우에는 과납금 중에서 원상회복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이자 가산 없이 반환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560-3424)